

2022학년도 정부지원 어린이집 원아모집

1. 진행 일정

구분	내용	비고
모집 대상	어린이집별로 상이함으로 상세모집요강은 각 어린이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공고 기간	◇ 공고 : 2021년 10월 15일 (금) ~ 10월 31일(일)	
입소대기 방법	1. 아이사랑보육포털(www.childcare.go.kr)로 학부모가 직접 입소대기 신청, 또는 2.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대기신청서와 부모 동의서 작성 제출	
모집 및 접수방법	- 입소대기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 원아 중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 - 원으로부터 개별 연락 받은 후 증빙서류는 방문 접수	1. 우선순위 및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. 2. 동일점수에서는 입소 대기신청 순서에 따름. 3. 2순위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이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음. 4.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,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.
신학기 입소확정일	2021년 11월 1일(월) 오전 10시 (보육통합 시스템상, 연기될 수 있음)	어린이집에서 입소대기시스템에 입소 확정된 시 선 순위 보호자와 입소상담 후 확정.
증빙서류 제출기간	1차: 2021년 11월 01일(월) ~ 11월 12일(금) 2차: 2022년 2월 22일(화) ~ 2월 28일(월) (평일 09:00 ~ 18:00)	①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 확인용) ② 입소순위 증빙서류 - 맛벌이 증빙 서류는 접수시(선확인용) / 입학전 7일 이내(시스템등록용) 2회 제출 -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' 입소일 '을 기준으로 판단.
유의점	*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,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. * 입소확정 이후에는, 우선순위 점수 변경이 불가합니다. 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세요. (우선순위 점수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확정 이전에 수정해 주세요.) * 입소확정원아보다 우선순위가 높더라도, 입소 확정 이후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.	
안 내	* 신학기 입소 확정자는 2022년 3월에 입소합니다. * 한 어린이집에서 신학기 입소 확정시 타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확정이 불가합니다. * 신입원아 입소 확정 취소자가 발생할 때는 입소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추가 입소됩니다. *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,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가 가능합니다. * 다만, 선 순위자 등원 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이 가능합니다.(전화, 문자, 우편, 직접방문 등 총 3회 이상)	

2. 모집원아 입소 순위

구분	영유아법 제 28조, 시행령 제21조의 4,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
1순위	1.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.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.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
-항목당 100점	4.[장애인복지법]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*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(3자녀이상 가구 자녀 및	5.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.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(200점)

<p>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, 맞벌이이면서 3자녀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)</p> <p>*1,2,3,4,5,8은 시스템상에서 확인되므로 증빙자료 필요 없음.</p>	<p>7.[다문화가족지원법]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</p> <p>*[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]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[국적법]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</p> <p>*[국적법]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</p> <p>8.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·제14호·제16호), 상이자(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·제17호)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*의 자녀</p> <p>*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]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사람</p> <p>9.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(200점)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</p> <p>* 2자녀 가구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</p> <p>*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.</p> <p>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일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(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등 제출)</p> <p>10.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</p> <p>11.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</p> <p>12.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</p>
<p>2순위 -항목당 50점</p>	<p>1. 기타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</p> <p>2.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</p> <p>※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</p> <p>3.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(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)인 아동의 형제·자매</p> <p>※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.</p>
<p>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</p>	<p>1. 법인·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·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</p> <p>2. [주택법]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 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</p> <p>*상기 2)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간의 협의한 범위(30~70%)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·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(단,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~80% 범위 적용)</p>

[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] 적용원칙

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
 - 취업의 기준 :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
 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(자영업자 포함)
 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 -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.
 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.
- 취업준비자
 -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
 - 구직등록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
 - 다만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(서류상 확인)
- 자영업자
 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*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
 -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
 -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, 다만 농어촌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
- 예술인
 - [예술인 복지법 시행령]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
 - ※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
- 대학(원)생
 -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불인정
-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3. 확인서류

구분		확인서류	제출구분		
1 순 위	수급자	• 시스템 자동연계			
	한부모가족	• 시스템 자동연계			
	차상위계층	• 시스템 자동연계			
	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 형제·자매의 영유아	• 시스템 자동연계(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)			
	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	• 시스템 자동연계			
	다문화가족	•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 •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• 결혼이민자 중 [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]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동포 :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(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) •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중 1부 필수		
	제1형 당노아동	• 진단서 • 의사소견서(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)	필수 필수		
	국가유공자 자녀	• 국가유공자 확인서	필수		
	임신인 자녀의 영유아	• 임신 증빙 자료	필수		
	다자녀가구	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*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• 둘째자녀 이상 임신중인 경우: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	중 1부 필수		
	임신부	•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	필수		
	맞 벌 이	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• 위촉계약서 • 근로계약서 • 기타 재직증명 가능 서류	중 1부 필수	
			•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(근로복지공단) •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• 소득세납세증명서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• 고용·임금확인서(3개월 이상 이체내역) • 소득금액증명원 •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	중 1부 필수	
		대학원생	• 재학증명서 ※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	필수	
		예술인	• 예술인활동증명서 ※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	필수	
취업 준비자		① •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·수료증 •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(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) •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	중 1부 필수	①② 중 1부 필수	
		② •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* 구직활동 증명서류 : 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, 실습확인서,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수강증(출석 수업에 한함)	필수		
자 영 업 자		공통	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적 증명 가능 서류	필수	
		일반	•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 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•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	중 1부 필수	
		신규 자영 업자	*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 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• 소득신고 증빙서류 (세무서 접수증 등) • 사업장 매출 장부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) •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등	중 1부 필수	
		농 어 업 인	• 농(어)업인 확인서 • 농(어)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• 어선원부등본 • 기타 농·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	중 1부 필수	
	• 매출계약서 • 판매증명서 •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		중 1부 필수		
2 순 위	기타 한부모가족	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	필수		
	조손가족	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	필수		
	입양된 영유아	• 입양확인서	필수		
	가정위탁 보호아동	• 가정위탁보호확인서	필수		
	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·자매	• 형제·자매 재원 확인 * 단,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.			